

2018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대한민국 실시 모집요강

* 대한민국 응시자는 반드시 본 모집요강을 참조하여 신청 할 것.(금년 시험실시, 2018년도부터 장학금 지급)

*일본 문부과학성의 모집요강을 기본으로 대한민국 내 실시 요강을 작성함에 있어, 추가된 내용은 -----밑줄로 표시하였음.

연구유학생

일본정부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 정규생 또는 비정규생으로서 연구를 실시하는 외국인 유학생(연구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아 래

1. 연구 유학생의 정의

정규생으로 대학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또는 전문직 학위 과정에 재학하는 자, 비정규생으로 대학의 학부, 대학원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소 등에서 과정의 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자 및 이들에 앞서 일본어 등 예비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영리더 프로그램 유학생 및 교원 연수 유학생을 제외한다)

2. 모집분야

응시자가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 또는 관련 분야로 일본의 대학원에서 연구 가능한 분야로 한다.

단, 각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이 해당국가 별로 특정모집분야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의학, 치학 및 복지학 등을 전공하는 자는, 일본 법률에 근거,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얻을 때까지는, 진료, 수술 등 임상 연수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가부끼나 일본무용 등의 전통 예능, 공장 등에서의 특정 기술, 기능 등의 실무 연수를 목적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덧붙여, 복수 또는 부전공 등의 분야로 응시할 경우 그와 관련된 이수한 과목 등을 성적증명서에 혈광색 등으로 체크할 것.

3. 응시자의 자격 및 조건

일본정부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 연구를 하는 것을 통해 일본과 자국간의 가교가 되고, 양국 나아가 세계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다.

(1) 국적 : 일본정부와 국교관계가 있는 나라의 국적 소지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 신청 시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신청 시 일본 이외에서 생활 근거지를 둔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는 일본 입국 시까지 외국의 국적을 선택하고 일본국적을 포기할 예정자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한다. 선택은 응시자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재외공관에서 실시한다.

(2) 연령 : 원칙적으로 1983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

(3) 학력 : 일본 입국 시까지 일본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덧붙여 일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해당자로 한다.

① 외국의 학교 교육에 있어서 16년(의학, 치학, 수의학 및 6년제 학부·학과에 기초를 두는 약학을 이수하는 박사 과정 입학에 대해서는 18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예정자를 포함한다.)

② 일본의 대학원에서 개별 입학자격심사에 의해,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22세(의학, 치학, 수의학 및 6년제 학부·학과에 기초를 두는 약학을 이수하는 박사 과정 입학에 대해서는 24세)에 이른 자. (예정자를 포함한다.)

상기 이외의 자격에 의해 일본의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지는 자. (예정자를 포함한다.)

(*주. 1) 최종출신대학(대학원)의 성적이 70%이상일 것(신청마감일 시점).

(*주. 2) 학부 졸업예정자 등은 소속 대학관계자의 추천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4) 일본어 등 :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하려는 의욕이 있는 자. 일본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일본 입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이해하려는 의욕이 있을 것. 또한, 일본에서 연구에 종사하고, 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질 것.

(5) 건강 : 소정 건강진단서 양식에 의해, 일본유학에 대해 심신 모두 지장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6) 출발 시기 : 일본 입국 시기는 아래의 하나로 하고, 희망하는 시기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원칙적으로 신청 후 입국 시기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 사정에 의해 아래 기일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용 대학이 지정한 기일까지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용을 사퇴할 것.

① 4월에 유학을 개시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사이.

② 9월 또는 10월에 유학을 개시하는 자는 채용대학이 정하는 같은 해, 각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로부터 시작하여 전후 2주 중, 채용대학이 지정하는 기일.

「일본입국시기」는 신청서에 기재된 입국시기로 한다. 신청 후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7) 사증 취득 : 일본 입국 전에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1의 4에서 정한 「유학」 비자를 취득하고, 「유학」이라는 재류자격으로 입국해야 한다. 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적 국에 있는 재외공관에선 현지발급 하는 것으로 한다.

(8) 일본 유학 중, 일본의 국제화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널리 지역 학교나 지역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국과 일본과의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졸업 후에도 유학한 대학과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졸업 후 앙케이트 조사 등에도 협력하는 한편, 귀국 후에는 재외공관 등이 실시하는 각 사업에 협력하는 것으로, 자국과 일본과의 관계의 축진을 위해 노력할 것.

(9)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 외로 한다. 채용 이후 판명이 날 경우에는 사퇴할 것.

- ① 제1차합격자 발표일(8월 첫째 주 정도)이전까지 현역 군인 또는 군속 자격인 자.
- ② 문부과학성 및 채용 대학이 지정하는 기일에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자.
- ③ 과거 일본정부(문부과학성)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로 장학금 지급이 종료된 다음부터 장학금지급 개시까지 3년 이상의 교육연구 경력이 없는 자. 다만, 귀국 후, 재적 대학을 졸업한(예정자를 포함)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그리고 일한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및 영리디프로그램 유학생이 연구 유학생으로서 응시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 ④ 이미 재류 자격 「유학」으로 일본 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자, 및 자국에 있어서의 신청 시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전까지 사비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일본 대학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자. 다만 신청시 단기유학 연수제도에 의해 일본대학에 단기간 재적하고 있는 자 중, 재외공관이 실시하는 입국 전 사전오리엔테이션 이전까지, 수료 후 귀국이 확실한 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⑤ 입국 후, 본 제도에 의한 장학금과 중복하여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 정부기관을 포함)으로 부터 장학금 등을 수여할 예정인 자.
- ⑥ 「**졸업예정자**」가 소정 기일까지 학력의 자격 및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 또한, 원칙적으로 학부과정 재학중인 자로 10월 말까지 **졸업예정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접수마감 이전까지 대학의 학부과정을 휴학중인 자.
- ⑦ 신청 시 이중 국적자로 일본 입국 시까지 일본 국적을 포기한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자.
- ⑧ 일본 입국 후, 재류자격을 「유학」 이외로 변경한 자.
- ⑨ 신청 시부터 일본 이외에서의 필드 워크, 인턴십 등을 희망하는 자.
- ⑩ 박사과정 수료자 중,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
- ⑪ 응시자가 공무원, 교원 등 공공기관 및 공공기업 등에 근무할 경우, 면접 서류제출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유학 허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
- ⑫ 장기간 일본 재류자(2018년 4월 1일 이전까지 과거 5년간 합산하여 3년이상 일본에 재류한 자. 또한, 3년 이내라도 하더라도 응시시점부터 해서 계속해서 일본 재류가 예상되는 자. 응모시점에서 만 1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는, 면접서류 제출일까지 그 출입국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⑬ 응시자의 취득 전공과 유학 희망 전공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자와, 해외 교육기관 출신자 등 개별접수 희망자가 해당 기일까지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자.
- ⑭ 대사관 주최 입국 전 사전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없는 자. 또한, 지정기간 내에 현지에서 발급하는 「유학」비자를 받을 수 없는 자.
- ⑮ 일본의 학위과정에 없는 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대사관의 사전 허가를 받고, 제1차합격자 발표일(8월 첫째 주 정도)이전까지 일본의 각 대학의 입학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여 제출해야 대사관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4. 장학금 지급 기간

- (1) 비정규생(연구생, 과목 등 이수생, 청강생 등으로 재적하는 경우, 2018년 4월에 입국할 경우: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018년 9월 또는 10월에 입국할 경우: 2018년 9월 또는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어느 경우에도, 일본어 등 예비교육(이하 「예비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는 6개월간의 예비교육 기간을 포함한다. 상기 이외 입국의 경우, 별도 문부과학성에서 결정한다.
- (2) 정규생으로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 과정 및 전문직 학위 과정에 재적할 경우는 입국 시기에 관계없이, 각각의 정규과정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각 과정의 표준 수업 연한은 9.(4)~(6)을 참조)으로 한다. 예비교육이 필요한 자는 별도로 6개월간의 예비교육 기간을 가산한다.

5.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

비정규생(연구생 등)으로부터 정규생으로 대학원 정규과정으로 진학 희망자, 혹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전문직 학위과정으로부터 박사과정에 진학을 희망하는 자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히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간의 연장심사를 받아 장학금 지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단, 아래 사항에 유의할 것.

- ① 비정규생(연구생 등)으로 장학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 ②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 기간 연장신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위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사비 유학생으로서 진학 또는 재학하는 것은 가능.)
- ③ 비정규생(연구생 등)으로 재적하는 기간 내에 정규 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단, 2020년 4월 입학에 희망하는 경우는 귀국여비 지급신청을 포기한다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4월 정규과정에 입학한 자가 소정의 기간 안에 연구를 마치고 귀국하는 경우 귀국 여비는, 이하 6. (3) ②와 같이 신청할 수 있다.

6. 장학금 등

- (1) 장학금 : 월액 143,000엔(비정규생(연구생 등), 144,000엔(석사과정 및 전문직 학위과정), 145,000엔(박사 과정)을 지급한다. 단, 대학을 휴학 및 장기 결석한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특정 지역에 있어서 수학 연구하는 자, 월 2,000엔 또는, 3,000엔의 지역 수당을 월액단위로 가산한다. 또한, 예산 상황에 따라 해마다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기간에 관한 장학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① 신청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

- ②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서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 ③ 일본의 법령 등을 위반하여,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 경우.
 - ④ 대학 또는 예비교육기관에 있어 퇴학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혹은 제적되었을 때.(또한, 대학 등에 있어 처분을 결정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때도 있다.)
 - ⑤ 학업성적불량이거나 정학, 휴학 등에 의해 표준 수업 연한 내에 수료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 ⑥ 「유학」 재류자격이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 되었을 때.
 - ⑦ 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서 특정된 것을 제외한다.) 지급을 받았을 때.
 - ⑧ 채용 후,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상위과정에 진학할 때.
- (2) 수업료 등 : 대학에 있어서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검정료는 일본정부가 부담한다. 정규생으로 진학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불합격이 된 경우의 입학검정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3) 여비 :

- ① 입국 여비 : 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여행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 근처의 국제공항(원칙적으로 국적국내)으로부터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채용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일본 국내에 도착할 때의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또한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근처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공항세, 공항사용료, 도항에 필요한 특별세, 일본내의 여비(항공기 환승 비용을 포함.) 여행보험료 등은 유학생 자기부담으로 한다.
- ② 귀국 여비 : 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연구를 종료하고, 문부과학성이 정한 장학금 지급기간(상기 4.)의 종료 월내에 귀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채용 대학이 통상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으로부터 해당 유학생이 도착하는 장소 부근의 국제공항(원칙적으로 국적 국내)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귀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항공세, 공항사용료, 여행에 필요한 특별세, 국적 국내에서의 여비(항공기 환승 비용을 포함.), 여행보험 등은 유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주 1) 「5. 장학금지급기간의 연장 ③」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2020년 4월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 신청을 행하였으나, 연장을 하지 않고 귀국하는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귀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연장 신청을 할 때에 충분히 유의할 것.

(*주 2) 본인 사정 및 상기 (1) ①~⑧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 전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주 3) 장학금 지급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예: 일본에서의 취직), 일시 귀국하는 경우의 귀국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7. 제1차 선고 및 입학허가서 등의 취득

- (1) 제의 공관은 신청서류, 어학필기시험 및 면접에 근거해, 제 1 차 선고를 실시한다.
- (2) 어학필기시험은, 일본어와 영어로 한다. 반드시 전원이 수험에 응할 것. 일본어 시험은 대학 배치나 일본 입국 후의 일본어 교육 시 참고 자료로서 활용한다. 특히,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역사, 일본법제 등, 충분한 일본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일본어 능력이 불충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하지 않는다.
- (3) 각 선고에 해당하는 심사 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 서류 및 서류 심사 : 학부를 포함한 최종 출신대학에서 전체 평균성적이 70% 이상의 성적일 것, 또한,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것. 구비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을 것. 그 외 국비유학생 자격 등.

- 제출 서류 및 마감 등은 아래 10. 응시절차 (1)필기시험 응시자 제출 서류 참조.

- 제출 방법: 각 대학(학부과정)의 총장(학장)명의 공문서와 함께 응시자 서류를 수합하여 제출(각 응시자는 졸업 또는 졸업 예정 대학 학부 담당부서에 아래 10. 응시절차 (1)필기시험 응시자 제출 서류 중, 응시자 제출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추천 기관에 제출(원칙적으로 응시자 직접 접수는 불가).)

- 제출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담당

*주소: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윤니동 114-8)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담당자 앞

*전자메일: kyuhoh.cho@so.mofa.go.jp

- 대상 인원: 시험 장소 제한 등에 의해 최종선발인원의 약 10배수 이내 예정.

- 심사 방법: 제출된 서류 중, 각 응시자 학교 성적 및 연구계획 등을 심사하여 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예정(우선 순위는 학교성적, 연구계획, 서류 준비가 우수자 우선).

- 접수 안내: 2017년 6월 7일(수)이전까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필기시험 대상자 수험번호 발표 예정(덧붙여 접수번호와 수험번호는 각 대학 등 추천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 개별 접수자는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② 필기 시험: 일본어 또는 영어 모두 일정 성적 이상일 것.

- 시험 일시: 2017년 6월 11일(일) 12:00-18:30 예정(필기시험 대상자 발표시 시험 시간 등 상세 내용 안내).

- 시험 장소: 서울대신고등학교(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3번출구 5분) 및 주재주일본국총영사관 예정.

- 대상 인원: 서류 접수자(단, 추후에라도 서류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격을 박탈함).

- 선고 내용: 문과계 분야는 일본어, 영어 필기시험. 이과계 분야는 일본어, 영어 수학 필기시험(단, 수험시험은 자격시험으로 100점만점에 40점이상(정족 부족시 수학과목 전체평균 이상자 중 일본어 영어 합산성적 상위자로 보충 예정)일 것.). 문이과 각 분야별로 일본어와 영어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합산성적 상위자 순으로 면접 대상자를 결정. 단, 각 과목별 성적 50점 미만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동점자일 경우 일본어 영어 수학 성적 우수자 순(각 분야별 면접인원 부족 시 영어 일본어 합 상위자로 보충할 수도 있다.).

- 선고 방법: 응시자는 각 지원 분야(문과계, 이과계 관련)를 선택해야 되며, 선택한 관련분야별 응시자 비율에

의해 면접대상 인원이 정해 진다. 또한 각 분야별로 나뉘어 면접을 실시하여 면접대상자 비율에 따라 최종 추천인원이 결정됨.

-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필기도구(흑색 볼펜) 등.

- 결과 발표: 2017년 7월 3일(월)이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면접대상자의 수험번호를 발표예정.

③ 면접: 일본유학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일본대학에 대한 정보수집을 실시하고 있는 자일 것 등.

또한, 일본어 또는 영어의 회화 능력에 대하여, 일본의 지도교원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학 능력이 있을 것. 다만, 일본어 능력이 필요한 전공 분야를 희망하는 자에 있어서는, 상당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 시험 일시: 7월 17일(월)~26일(수) 예정.(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으며, 면접대상자발표시 확정일정 발표 예정).

- 시험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예정.

- 대상 인원: 약 60명 정도(변동 가능).

- 제출서류 및 절차: 10. 응시절차의 제출 서류 (2)면접대상자 제출서류 참조.

- 선고 내용: 연구계획, 학교 성적, 추천서 등 제출서류, 유학의지, 인성, 잠재성 등.

- 선고 방법: 각 응시분야별 면접일정을 정하여 실시하며, 면접 순번에 의해 1인당 약 10~15분 정도 실시.

* 최종 필기선고 30%, 서류심사 30%, 면접심사 40%를 합산하여 성적 상위자 결정.

- 추천 인원: 30명 정도 추천예정(과거 최종합격 실적, 2017년도 29명, 2016년도 41명).

- 복장 및 지참: 면접에 적당한 복장일 것. 신분증, 및 수험표를 지참하여 수험표는 좌측 흉부에 부착할 것.

(4) 제 1차 선고의 결과 통지: 면접 종료 후 약 3주 이내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이며, 채택 여부의 이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제 1차 선고에서 합격한 자가 반드시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다.

(5) 제 1차 선고 합격자는, 제 1차 선고 발표 후부터, 8월 31일(목)까지 희망하는 일본의 대학(최대 3개 대학까지)과 직접 연락을 하여, 대학원의 정규생 또는 비정규생(연구생 등)으로서의 입학허가서, 혹은 수락내락서(이하, 「입학허가서 등」이라고 한다.)의 발행 의뢰를 할 것. (9월 1일(금) 이후에 일본의 대학에 입학허가서 등의 발행 의뢰를 취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8월 31일은, 입학허가서의 발행 기한이 아니므로, 대학에 회답을 재촉하지 말 것.) 또한, 입학허가서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각 대학의 유학생 담당 부서 연락처와, 대학 연구자의 검색 사이트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6) 대학에 입학허가서 등을 의뢰할 때에는, 재외공관에 제출한 서류 일체(신청서, 출신 대학의 성적증명서,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 등에 재외공관의 확인 인장이 된 것. 및 재외공관이 발행하는 제 1차 선고 합격증명서를 대학에 직접 제출할 것. 이때 대학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

(7) 대학으로부터 회답 현황은 수시, 재외공관에 보고할 것. 또한, 대학에서 회답 현황을 거쳐, 최종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를 재외 공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할 것

8. 제 2차 선고와 대학 배치

(1) 문부과학성은, 재외공관의 제 1차 선고의 결과에 근거, 제 2차 선고를 실시, 배치대학이 결정된 자를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채용한다.

또한, 신청자를 수용함으로써 대량 살상 무기 등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기술 제공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신청자가 경제 산업 성이 만든 외국 사용자 목록 게재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이 사람에게 대해 대량 살상 무기 등의 관련 기술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불합격된다.

(2) 대학배치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입학 허가서를 받은 대학이며, 배치희망대학신청서에 기재한 제1부터 제3희망 대학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이 배치 협의를 행한다. 협의 결과, 대학에서 승낙을 받으면 해당 대학에 배치한다.

다만, 희망하는 대학이 공사립인 경우에는 수업료 등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예산의 제약이 있는 등, 배치희망대학신청서에 기재된 희망순위에 맞지 않을 경우가 있다.

(3) 대학원 정규과정으로 입학허가서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생(연구생 등)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정규과정으로 배치한다.

(4) 대학에 있어서의 강의·실험·실습 등의 연구 지도를 받기 위해 일본어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배치대학으로부터 판단되었을 경우는, 최초 6개월간 배치된 대학 또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대학 등의 예비교육기관에 입학, 일본어교육을 받는다. 일본어교육을 수료한 자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배치 대학에 입학한다. 다만, 예비교육기관에 있어서의 성적 불량으로 인해 전문교육을 받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4. 장학금 지급기간 참조)

(5) 유학생이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본어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배치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 교육을 거치지 않고 정규생 또는 비정규 학생 (연구생 등)로 대학에 직접 입학 한다.

(6) 최종 채택 여부 결과 및 피 채용자 대학 배치 결과는 재외 공관을 통해 대체로 11 월부터 이듬해 2 월까지 통지된다. 채택 여부 이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배치 대학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9. 진학 및 학위 취득

(1) 비정규생(연구생 등)으로부터 대학원의 정규 과정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자, 혹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전문직 학위과정으로부터 박사과정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시험을 수험하여 합격하면 진학할 수 있다. 다만, 진학 후도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별도 심사를 거쳐 장학금 지급기간의 연장을 인정받아야 한다. (5. 장학금 지급기간 의 연장 참조.) 덧붙여 비정규생(연구생 등)으로 재적한 채로 장학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2) 비정규생(연구생 등)으로부터 대학원 정규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는 비정규생(연구생 등)으로서 재적하고 있는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학생의 전문분야·능력 등으로 판단하여, 해당 대학의 대학원으로서의 진학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입학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다른 대학원에 진학하는

- 것도 가능하다.
- (3) 대학원의 입학시험은 대학에 따라 다르나, 외국어, 전문과목, 논문 등이 부과된다.
 - (4) 일본의 학교제도상, 석사과정은, 통상 대학졸업 후(학교교육에 있어서의 16년의 과정을 수료 후)의 2년 과정이며, 또, 박사과정은, 통상, 석사과정 수료 후의 3년 과정으로 되어 있다. 이 기간을 재학하여 소정의 단위를 취득해 연구논문을 제출 후,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각각 학위가 주어진다.
 - (5) 의학, 치학, 수의학 및 6년제 학부·학과에 기초를 두는 약학에 대해서는, 통상, 4년의 박사과정뿐이다. 이 경우, 입학 자격은,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18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과정이 16년인 경우는, 과정 수료 후, 대학, 연구소 등에서 2년 이상의 연구력을 가지고, 일본의 대학원이 전자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 (6) 전문직 학위과정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담당하기 위한 깊은 학식 및 탁월한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3년도부터 새롭게 제도화된 전문직 대학원 과정이다. 표준 수업연한은 통상 2년이다. 전공 분야에 따라서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가 있다. 수료하면 석사(전문직) 학위가 수여된다.
- 또한, 전문직 학위 과정 안에는, 법조양성을 위한 법과대학원의 과정도 있어, 수업 연한은 3년, 수료하면 법무 박사(전문직)의 학위가 수여된다.

10. 응시 절차

응시자는, 아래 서류 일체를 재외 공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한다.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1) **㉔ 필기 응시자용 제출 서류**(아래 추천 마감은 추천기관의 제출마감일므로 응시자의 서류 제출은 그보다 일찍 제출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 제출 마감:

- ◆ 이메일 제출 마감: **2017년 5월 25일(목) 16:00시 이전까지.**
- ◆ 서류 제출 마감: **2017년 5월 29일(월) 16:00시 이전까지**(우편의 경우 5월 25일(목) 소인까지만 유효) 단, 추천기관이 없는 수험자의 경우, 사전에 개별접수 사전 허가 신청(*주 9)을 하여, **5월 22일(월) 16:00시 이전까지 허가서 양식(허가 번호)을 발부 받아, 추천기관 공문서 대신 사용하여 접수마감일까지 접수.**

- **제출 방법:** 응시자는 (나) 응시자 제출서류 ㉔ 필기 응시자용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각 출신 학부의 대학에 제출하고, 각 대학의 추천 담당부서에서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취합, ㉔ 연구 추천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리스트를 제출하고, 기관장 명의 추천 공문서(전자결제의 경우 복사본, 내부결제 공문 사용 가능)와 함께 서류는 우편 또는 직접 본 관에 일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별첨 PS 참조- 2018 연구 응시자 제출서류 안내.pdf 파일을 참조할 것).**

- (가) **추천기관 제출서류:** 아래 서류 양식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A. **이메일 제출 양식: ㉔ 연구 추천자 리스트(소정파일) 1부**(이메일로만 제출)
 - * 학교 담당자가(전자메일 kyuho.cho@so.mofa.go.jp 앞으로) 송부.
 - (접수되면 이메일 발송자(기관 추천자)에게 접수마감일 다음날 까지, **접수번호** 등을 이메일로 답변하니, 답장(접수번호)을 수신하지 못했을 경우 반드시 전화로 문의 바람.)
 - B. **서류 제출 양식(학교 공문 및 응시자 서류):**
 - ① 기관장 공문서(양식 없음, 학교 공문서 양식(전자결제의 경우, 복사본을 첨부, 내부결제서도 가능)에 의함, 단 개별 접수자의 경우 개별접수 허가서 제출) 1매.
 - ② 아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일체(아래 (나) ㉔ 필기 응시자용 제출서류 참조)
 - C. **추천기관이 없는 개별접수자: ㉔ 개별접수 사전 허가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 공문 대신 사용(반드시 사전에 문의 및 허가를 받아야 접수할 수 있음).**

(나) **㉔ 필기 응시자용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①부터 ⑨까지 순서대로 원본 한 세트만 만들어 추천기관(출신대학 등)에 제출할 것.

No.	제출 서류 종류	㉔ 필기 응시자용	㉔ 변접 대상자용	㉔ 제1차 합격자용	비고 (복사본 및 데이터는 제1차 합격자만 제출)
①	신청서	○✓	-	○	2018년도 양식사용(주 4), √부분 사진1매 부착
㉔	신청서 데이터	-	-	데이터	2018년도 데이터 양식사용 이메일 제출 사진 파일 첨부
②	배치화강대학 신청서	○	-	-	2018년도 양식사용(주 4)
㉔	배치화강대학 신청서 데이터	-	-	데이터	2018년도 데이터 양식사용 이메일 제출
③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	○	-	○	2018년도 양식사용(주 5)
④	모든 출신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	-	○	출신 대학 또는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것(주 6)
⑤	모든 출신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재학 중인 경우 재학 증명서	○	-	○	학부 졸업 예정자는 졸업 예정 증명서(주 7) 또는 학부 재학 증명서와 함께 ㉔ 졸업 예정 확인서 제출
⑥	최종 출신 대학의 장 또는 담임 교사의 추천서	○	-	○	양식은 자유 샘플 있음
⑦	간장 간판서	-	○	○	2018년도 판 양식 사용. 단장대장자만 제출
⑧	● 논문 개요 등	●○	-	●○	논문을 집필하고 있는 사람만 제출(주 8)
⑨	● 직장 상사의 추천서	●○	-	●○	현재 직장에 붙어있는 자만 제출 양식은 자유 샘플 유.

⑩	●작품의 사진 또는 연주 녹음 전자매체 등	●○	-	●○	미술·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만 제출
⑪	연구유학생 응시원서	○	-	-	2018년도 양식사용(주 12) 1부본사진1매 부착
⑫	수험표	○	-	-	2018년도 양식사용(주 12) 1부본사진1매 부착
⑬	●학부 졸업예정자 추천인서(추천기관용)	●○	-	-	2018년도 양식사용(주 7) 학부 졸업예정자만
⑭	●개별접수 사진 허가서(대사관양식)	●○	-	-	2018년도 양식사용(주 9) 해당만
㉔	연구추천자 리스트(추천기관용)	데이터	-	-	2018년도 데이터양식사용, 추천기관 작성용, 이메일로 발송
㉕	연구면접대상자 엑셀파일(면접대상자용)	-	데이터	-	2018년도 양식사용, 면접대상자만 제출

*참 고: ○는 원본서류, ●는 복사본, √는 사진 부착, ●는 해당자만,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 파일만 제출, 또한, 필기시원 응시자는 ㉔필기 응시자용 서류를 작성, 일괄 취합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추천기관은 응시자의 서류를 수합하여 추천기관 공문서 및 추천자 리스트와 함께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해야 함.
제1차합격자의 경우 복사본은 2부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제출한 서류를 복사하여 보관해야 함.

- (*주 1) ●표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할 것
 - (*주 2) 모든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국문일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할 것
 - (*주 3) 모든 서류의 우측 상단에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① ~ ㉔까지 신청서류 번호표의 No. 참조를 기재할 것 또한 서류가 1매 이상일 경우에는 서류의 맨 마지막 페이지 우측 상단에 신청서류 번호표의 No. 참조) 바로 옆에 매수를 표시(예: 신청서와 같이 2매 이상일 경우 15, 5와 같이 모든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번호도 적을 것.)
 - (*주 4) 신청서 및 배치화명대학 신청서는 2018년도 양식을 사용할 것 신청서 등에 부착하는 사진은 총 3매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선명한 화질로 사진전용지에 인쇄한 것으로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 상반신·정면·탈모할 것(여권용 사진을 사용해도 무관) 또한 사진의 뒷면에는 국적 및 성명을 가압할 것 신청서 데이터에 가공하지 않은 여권용 원본 사진 데이터를 첨부하여, 선명한 화질 및 컬러로 인쇄한 것은 가능하다 다만 사진을 복사 또는 일반 프린트로 출력하여 부착하는 것은 불가 복사본은 원본에 사진 부착 후 복사할 것 또한 복사본이라도 서명란은 친필로 직접 서명할 것 그리고 제 1차선고 합격자는 신청서와 배치화명대학 신청서 데이터 파일을 직접 작성하여(서명란에는 영문이름 작성) 사진 파일(가공하지 않은 증명사진 원본 데이터는 가능한 5메가바이트 이내이며, 사진파일은 원본데이터 파일의 사진크기와 가로 세로 비율이 동일할 것)을 사진 란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주 5)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은, 대학 배치 시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자신의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2018년도 양식을 사용할 것
 - (*주 6) 출신 대학의 성적증명서는, 대학 학부, 대학원의 학년과 취득한 전공목 성적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성적어 몇 단계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면 학위취득증명서나 단위 및 단위로 졸업 등의 졸업증명서는 대응 불가) 또한 증명서 원본은 해외유학 사용 용도로써 각 소속 대학 또는 정부기관이 직접 발행한 관인 또는 압인인 찍혀 있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 개별 프린트로 출력 또는 팩스 발급(우체국 발급 등)서류는 불가하다 다만 출신 학교 내에 설치된 증명서 출력 기기에서 학교가 제공한 용지로 발급한 서류는 가능하다
 - (*주 7) 출신 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취득증명서는, 졸업증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으로도 대응가능(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원본은 제출하지 말 것) 다만 이 경우는, 해당 출신대학의 책임자 또는 해당국 대사관(국의 대학 출신의 경우)의 확인증명을 첨부할 것 또한 학부 졸업예정자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는 ㉔ 학부 졸업예정자 추천서류 양식을 추천기관 담당관으로부터 발부 받아 함께 제출할 것 단 대학원 재학자의 경우 재학증명서로 가능
 - (*주 8) 학위 논문개요 등은 졸업논문, 발표논문 등의 요약으로 무관하나, 학력 관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유의할 것
 - (*주 9) 개별 접수자만 추천기관의 추천이 어려운 국외교육기관 학부 졸업자 등을 말하며, 개별접수 희망자는 개별접수 사진 허가신청 마감전까지 이메일(yuhak@somofa.go.jp)로, 개별접수 자격심사신청서를, 발부 작성 제출하여, 사전에 접수 가능 심사를 거쳐 ㉔ 개별접수 사진 허가서(허가번호를 추천기관 공문번호에 기입)를 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 (*주 10) 추천서의 경우 양식은 자유이며, 샘플 양식을 사용해도 무관하다
 - (*주 11) 모든 서류는 면접자 제출서류를 위해 제출한 서류 일체의 복사본을 반드시 만들어 둘 것
 - (*주 12) 응시원서 및 수험표 등의 양식은 재외공관의 서류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 *상기 파일 등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해당 국비유학 모집 안내 게시물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 (2) ㉔ 면접 대상자용 제출 서류: 본 서류는 면접 대상자가 직접 제출함.
- 제출 마감: 2017년 7월 10일(월) 16:00시 이전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제출.
제출 서류: 면접까지 제출서류 ㉔ 건강진단서(소정양식) [원본 1매]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또한, 서류양식 ㉔ 연구 면접대상자 엑셀파일(소정양식)은 전자메일 kyuhcho@so.mofa.go.jp로만 제출.
- (3) ㉔ 제1차 선고 합격대상자용 제출 서류: 본 서류는 대상자가 직접 제출함.
- 제출 마감: 2017년 8월 10일(목) 16:00시 이전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제출.
제출 서류: 응시자 제출서류 ㉔ ~ ㉔까지의 서류 복사 2부의 함께 ㉔신청서(사진파일 첨부)와 ㉔배치화명대학 신청서 데이터 양식을 작성하여 파일 이름 뒤에 본인의 수험번호를 더하여 파일명을 저장한 다음, 전자메일 kyuhcho@so.mofa.go.jp로 제출.

11. 주의사항

- (1) 일본에 입국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기후, 풍토, 습관,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법제도의 차이, 대학의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입국 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까지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정도 필요하므로, 생활 자금으로서 대략 필요로 하는 비용을 최저 미화 2,000달러 정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일본 입국 후 본인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4) 숙소에 대하여

① 대학의 유학생 숙소

유학생을 위한 전용숙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자는 희망할 경우, 소정의 조건하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수에 제한이 있어, 희망자 전원이 입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② 민간의 숙소 등

상기의 숙소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일반 학생기숙사나, 민간의 숙소에 본인 부담으로 입주하게 된다. 또한,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가족용 숙소의 확보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학생이 일본으로 입국 후, 숙소를 확보한 뒤에 배우자·가족 등을 불러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채용된 경우, 채용에 관한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배치 대학·대학원·연구과·학부, 전공 분야, 재적 기간, 수료 후의 진로, 연락처 (주소, 전화 번호, E-mail 주소))을 일본 정부에서 실시하는 유학생 사업 (유학중의 지원, 유학 종료자의 팔로우업, 유학생 제도 개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계 행정 기관과 공유한다.

또한, 졸업 후에 일본정부로부터 귀국 국비외국인 유학생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

또한 채용자에 관한 정보(생년월일 및 연락처를 제외)는 일본정부가 작성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촉진을 위한 홍보자료 등에 있어서, 특히,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귀국 국비외국인 유학생을 소개 하기 위해 공표하는 경우가 있다.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용을 결정할 때 제출을 요구한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의 준수 사항을, 정해진 서약서에 의해서, 본 방침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방침에 대해 동의하는 자를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용한다.

- (6) 모집요강, 신청서류에 병기된 영문은 편의상 붙여 넣은 것이고, 영문에 의한 표현이 일본어 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 (7) 이 모집요강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그 외에 의문이 있다면 재외공관에 문의하고, 그 지시에 따를 것.
- (8) 이 모집요강에 정해진 것 이외에 국비외국인 유학생 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일본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주1) 모집요강의 내용은 매년 일본정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람.

*주2) 본 내용을 추천기관 이외에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얻어 사용할 것(무단사용을 금지한다).

<참 고>

-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 서류제출:

주소: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담당 조규호 앞

전화: 02-765-3011, 팩스:02-742-4629, 전자메일: kyuho.cho@so.mofa.go.jp